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18561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2204943)	2024.10.2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7.)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7.)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26.3.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안호영의원 (2206600)	2024.12.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에 직접 회부(25.02.1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7.)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26.3.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이원택의원 (2210243)	2025.04.30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0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7.)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6.3.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문금주의원 (2210799)	2025.06.13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0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11.17.)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6.3.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송옥주의원 (2211206)	2025.07.0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5.09.17.)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6.3.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최혁진의원/ 복기왕의원 (2214967)	2025.12.0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6.02.0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6.3.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03.24.)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6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3.26.)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2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생략)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 ----- ----- <u>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u>

3. (생 략) ③ ~ ⑤ (생 략)	<u>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 본법」 제3조제6호에 따 른 어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의 사업장</u>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